사업방법서 별지

(착한골프보험)

1. 보험의 종류

특종(종합)/가계성

2.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

가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신체
나. 법률상의 배상책임
다. 비용손해

3. 보험기간

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4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
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.

5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6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나. 판매 형태에 관한 사항
- 보험업법 제83조(모집을 할 수 있는 자)의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『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) 또는 직원』을 판매자로 하고,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)를 통하여 청약(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한

합니다) 및 가입하는 경우

다. 하나의 계약에 있어 상해위험보장, 재산(물)위험보장, 배상책임손해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장에 대하여 가입하여야 한다.

라.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 사항
- 보험증권, 청약서 및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마.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 운용에 관한 사항
-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.

바. 납입주기 : 일시납

사. 홀인원비용특별약관(보험기간중 1회)의 가입금액은 1,000만원을 한도로 운영한다.

아. 보험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
-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.

자. "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" 운영에 관한 사항
- 적용근거 :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-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1)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2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「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- 기타
  1)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 2)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차. 동반경기자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동반경기자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이 1일이하인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

수 있다.